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근무시간 단축사유에 따른 신청철회 사유

- 가족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건강 :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은퇴준비 또는 학업 :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획의 취소

■ 근무시간 단축 종료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근무시간 단축기간 중 종료사유

- 가족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건강 :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은퇴준비 또는 학업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전 직무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은 다음 세가지 경우로 구분

구분	단축시간 단축 종료일
근로자가 통지하고, 사업주가 복귀일을 지정한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복귀일의 전날
근로자가 통지했으나, 사업주가 복귀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근로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 복귀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작성
- 연장근로의 제한
-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위라밸일자리 장려금

위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도입
-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 ③ 단축기간 1개월 이상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⑤ 초과근로 제한

■ 지원 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최대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정액)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한도

단축 개시일의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서 제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 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버튼 클릭)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참고
문의: 1350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WORK
LIFE
BALANCE



고용노동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 '20. 1. 1.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 1. 1.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22. 1. 1.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 허용대상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고용형태 무관)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음
(남녀고평법 제22조의3)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가 해당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이때 건강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
- 질병·부상을 치료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

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하며
-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됨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초 1년 + 연장 2년
(학업은 총 1년)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 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

* 학업사유의 경우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음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①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④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해도 2년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연장

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단축근무



근로시간 단축 허용



단축 후 복귀

-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함
- ▶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 허용간주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절차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단축기간의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 지정하여 허용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학업 외 사유는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단축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가능